제8장 인사와 징계

1. 인사명령

(1) 인사명령의 의의

사용자의 명령으로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변경되거나 또
 는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것

(2) 인사명령의 내용

- 근로자의 직급이 변경되는 인사명령: 승진, 승급, 강등
- 근로자의 근무지 또는 담당업무가 변경되는 인사명령

1. 인사명령

(3) 인사명령의 법적 근거

- **사용자의 인사권**: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<u>원</u>칙적으로 **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**해야 함(대법원 95누1730)

2. 전직

(1) 전직의 의미

- 종전의 **직무내용이**나 **근무지**를 **변경**하는 인사처분
- 전보(전환배치), 전근

(2) 전직의 제한

- <u>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명할 수 없음</u>
- 근로계약의 내용, 업무상 필요성, 근로자와 협의 고려
- 전직의 정당성 →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
 익을 비교

3. 전출

- <u>원래 기업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</u>하면서, <u>잠정적으로 다른</u> 기업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
- 자회사 등 관련회사에 경영지도, 기술지도를 위한 파견, 근로자 경력개발 등, 고용조정(해고회피)의 일환

4. 전적

- <u>원래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해소</u>하고, <u>다른 기업과 새로운</u> <u>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</u> 형태
- 회사가 신규 자회사설립 등 필요에 의해 자회사 등 관계 회사 등으로 소속을 변경시키는 것

5. 휴직

-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, 근로자의 희망(의원휴직)이
 나 사용자의 명령(명령휴직)에 따라 근모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
- 질병, 전염병 예방, 공직 취임, 병역 의무 이행, 형사기소 나 징계절차 진행, 해고회피 등
- 의원휴직의 경우 이를 허가할 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음.
- 그러나 법률에 사유가 규정되어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육 아휴직 등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음.
- 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나,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경 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.

6. 대기발령(직위해제)

-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명령
- 회사의 경영상황(경영상 해고 요건상 해고회피), 근로자의 업무상 비리 등으로 근로자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이루어짐
- 통상 자택대기와 회사대기의 유형이 있음
- 징계와의 구별: 대기발령은 <u>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, 징계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.</u>

7. 징계

(1) 징계의 의의

- 기업은 수많은 사람과 자산과 설비가 투입된 조직이므로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업질서가 필요함.
-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위반한 경우 기업은 그 행위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데, 이러한 처분을 징계라고 함.
- 사용자는 <u>정당한 이유</u> 없이, 정직, 감봉,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음(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)
- 정당한 이유란?

<u>징계사유의 정당성, 징계절차의 정당성, 징계양정의 적절성</u>

(2) 징계의 사유

- 죄형법정주의 원칙
- 징계의 사유와 수단이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규정

<판례상 인정된 정당한 징계사유>

- 근무태만: 무단결근, 잦은 지각, 근무성적 불량, 직장이탈
- 업무상 지시위반: 인사명령 불응, 정당한 지시 거부 등
- 업무방해: 불법파업,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업무 방해 등
- 근무규율위반: 횡령, 배임, 절도, 손괴, 상사에 대한 폭언, 폭행, 음주, 도박 행위, 허위사실 유포 등 직장질서 문란 행위 등

(3) 징계절차

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았다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함. 이를 누락하면 징계절차 위반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그 징계는 무효

(4) 징계양정

-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징계권자가 갖는
 는 양정의 재량은 남용될 수 없음
- 징계사유의 종류, 정도, 반복여부, 직장질서 영향 여부 등 에 비추어 상당해야 함
- 징계를 결정함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함.

(5) 부당징계 구제절차

- 노동위원회(초심, 재심)
- 법원

<요약>

- 1. 판례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의 법적 근거가 사용자의 <u>ㅇㅇ</u>이 있다고 본다. 즉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ㅇㅇ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.
- 2. 전직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ㅇㅇㅇ ㅇㅇㅇ, 그리고 근로 자의 ㅇㅇㅇ ㅇㅇㅇ 등을 비교하여 판단한다.
- 3. 징계의 정당성은 ㅇㅇㅇㅇ, ㅇㅇㅇㅇ, ㅇㅇㅇㅇ 3가지가 모두 정당해야 함을 의미한다.
- 4. 징계가 부당한 경우, 근로자는 ㅇㅇㅇㅇㅇ 또는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